



Newsletter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지난 202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 법안이 정식 법률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우려를 낳았던 Pillar 2 도입 국가 투자자에 대한 Section 899 (보복세) 신설 조항은 최종적으로 철회¹되었습니다.

이번 OBBBA에 포함된 주요 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및 태양광·풍력 발전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청정 에너지 관련 세제 혜택의 조기 일몰을 추진;
- 이자비용 공제 한도의 산정 기준을 EBIT에서 EBITDA로 변경하고, 적격 자산에 대한 100% Bonus Depreciation(일시상각) 제도를 재도입했으며, 미국 내 R&D 비용에 대한 자본화 요건을 삭제하여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제고;
- 기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도입된 GILTI, FDII, BEAT 등 주요 국제조세 제도를 일부 개정하여 재조정.

본 뉴스레터는 OBBBA에 담긴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¹ Section 899 (보복세) 조항은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나,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중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처럼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외국 세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OBBBA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기업이나 국민에게 지급되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최대 15%의 원천징수세가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었으나, 2025년 6월 28일 G7 협의를 통해 미국에 모기업이 둔 그룹(US Parented Group)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는 것에 합의하고 미국은 Section 899 (보복세) 조항을 OBBBA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난 KPMG 삼정의 Global Tax Brief 7월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ax Newsletter - KPMG 한국](#)).

1. 세액공제 관련 개정

(1) 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기존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의 친환경 세제혜택(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은 그 혜택 내용이 변경되거나 예정보다 조기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에 대해 부여되던 세액공제(Section 30D / 45W)는 2025년 9월 30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CHIPS Act에 따른 반도체 등 첨단제조 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5%에서 35%로 상향되었으며, 당초 관심을 모았던 세액공제 양도 제한 및 폐지에 관한 규정은 최종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세법	개정세법
Section 48D (반도체 등 첨단제조 투자 세액공제)- CHIP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적격 첨단 제조 시설 투자비용 25%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6년 이후 가동되는 적격 첨단 제조 시설 투자비용 35% 공제
Section 45Y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적격 시설 설치 후 10년간 공제 혜택전력량 기준 기본 \$0.003/kWh 공제PWA 요건(prevaling wage and apprenticeship requirements)² 충족 시 \$0.015/kWh 공제일몰기한: 다음 중 늦은 연도부터 4년간 점진적 축소 및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풍력, 태양광 관련 일몰 조기 종료 및 기타 적격설비에 대한 일몰기한 기준 일원화 (풍력, 태양광 에너지 생산) 법안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경우 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만 가능 (기타 적격 설비)

² Prevailing Wage and Apprenticeship requirements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에서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예: PTC, ITC, 45Q, 45Y 등)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 숙련 인력 양성, 지역 임금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노동부가 정한 통상 임금(prevaling wages)을 시설의 건설, 변경 또는 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전체 노동 시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자격을 갖춘 견습공(apprentice)이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견습공 요건 관련해서는 견습공 대 숙련공 비율 규정을 따라야 하며, 4명 이상 작업 인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최소 1명의 공인 견습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전력 생산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 년 배출량의 25% 이하에 도달한 연도 - 2032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2 년부터 4 년간 점진적 축소 및 폐지 • 금지외국기관 제한규정(Prohibited Foreign Entity Rule) 도입 - 아래 참조
<p>Section 48E (청정 전력 투자 세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투자액의 6% 공제 • PWA 요건(prevaling wage and apprenticeship requirements) 충족 시 30% 공제 • 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하거나 국산 부품 사용시 각 추가 10% 공제 (최대 50%) • 일몰기한: 다음 중 늦은 연도 부터 4 년간 점진적 축소 및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전력 생산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 년 배출량의 25% 이하에 도달한 연도 - 2032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 태양광 관련 일몰 조기 종료 및 기타 적격설비에 대한 일몰기한 기준 일원화 (풍력,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 • 법안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경우 또는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만 가능 (기타 적격 설비) • 2032 년부터 4 년간 점진적 축소 및 폐지 • 금지외국기관 제한규정(Prohibited Foreign Entity Rule) 도입 - 아래 참조
<p>Section 45X (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청정에너지 부품의 미국내 비특관자 간 생산 및 판매에 대해 세액공제 • 점진적 공제 혜택 축소 (2030 년 75%, 2031 년 50%, 2032 년 25%, 이후 0%) • (핵심광물) 점진적 축소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점진적 축소 대상 및 일정 변경 (풍력 에너지 부품) • 2027 년 12 월 31 일 이후 공제 적용 불가 (핵심광물) • 2031 년~2033 년 동안 점진적 축소 후 폐지 (기타 적격 설비) • 현행과 같이 2030 년 ~ 2032 년까지 점진적 축소 후 폐지 • 핵심광물 범위에 제련용 석탄(metallurgical coal)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차 부품(initial eligible component)와 2 차 부품(secondary component)가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경우, 2 차 세액공제 요건 추가 • 금지외국기관 제한규정(Prohibited Foreign Entity Rule) 도입 - 아래 참조
--	--	---

1) 반도체 등 첨단제조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D) - CHIPS Act

미국 내에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시설에 대해 투자한 금액 중,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25%였던 세액공제율이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Y)

Section 45Y 는 납세자가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비특수관계인(unrelated person)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가동(placed in service) 시점부터 10 년간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해당 세액공제는 (1) 미국 내 전력 생산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 년 배출량의 25% 이하에 도달한 연도 또는 (2) 2032 년 중 늦은 연도부터 4 년간 공제율이 점진적 축소 및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OBBBA 법안에서는 풍력,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하여 동 법안 시행 후 12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경우 또는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설비의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 설비에 대해서는 2032 년부터 세액공제가 점진적 축소 및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청정에너지 설비가 금지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 으로부터 물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 PFE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E)

Section 48E 는 과세연도 중에 사용이 개시된(placed in service) 적격 시설에 대해 투자액의 6%의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가 허용되고, PWA 요건(Prevailing Wage and Apprenticeship requirements)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율이 30%로 확대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Section 45Y 에 따른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Section 48E 에 따른 세액공제 역시 (1) 미국 내 전력 생산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 년 배출량의 25% 이하에 도달한 연도 또는 (2) 2032 년 중 늦은 연도부터 4 년간 공제율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OBBBA 법안에 따르면 풍력,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동 법안 시행 후 12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경우 또는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설비의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 설비에 대해서는 2032 년부터 세액공제가 점진적 축소 및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지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으로부터 물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PFE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X)

Section 45X 는 특정 적격 부품의 미국 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이러한 적격 부품에는 풍력, 배터리, 태양광 관련 부품 뿐만 아니라, 특정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도 포함됩니다.

현행세법상 대부분의 적격 부품 생산에 대한 Section 45X 세액공제는 2030 년부터 2032 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지만, 핵심 광물 생산에 대해서는 단계적 축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OBBBA 법안에서는 세액공제의 단계적 축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 (1) 풍력 에너지 부품에 관한 세액공제는 2027 년 이후 적용되지 않고;
- (2)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세액공제는 2031 년 생산된 광물부터 2033 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되며;
- (3) 그 외 생산과 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과 같이 2030 년부터 2032 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

또한 1 차 부품(initial eligible component)와 2 차 부품(secondary component)이 동일 제조 시설에서 생산될 경우 2 차 부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2 차 부품의 직접 재료비의 최소 65%가 미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부품들에 의해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Section 45X 세액공제는 법안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PFE(금지외국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PFE 외 기업들에 있어서도 세액공제 대상 부품 등을 구성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재료비 중 PFE 로부터 조달한 부분의 비율이 특정비율(threshold rati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도별/부품별 특정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품]

연도	2026	2027	2028	2029	그 이후
태양광 부품	50%	40%	30%	20%	15%
풍력 부품	15%	10%	N/A	N/A	N/A
인버터	50%	45%	40%	35%	30%
배터리 부품	40%	35%	30%	20%	15%

[핵심광물]

연도	2026 ~ 2029	2030	2031	2032	그 이후
핵심광물	제한없음	75%	70%	60%	50%

(2)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제한 규정

OBBBA 법안은 기존의 '해외우려단체(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와 유사한 '금지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 요건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PFE 나 PFE 와 거래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금지외국기관(PFE)에는 특정외국기관(Specified Foreign Entities, SFE) 및 외국영향기관(Foreign Influenced Entities, FIE)가 포함됩니다.

특정외국기관(SFE)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 및 국적법」 제 219 조(8 U.S.C. 1189)에 따라 국무장관이 외국 테러 기관으로 특정한 기관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리하는 특별 특정 국민 및 차단 대상자 명단(SDN List)에 포함된 기관
- 미국 법무장관에 의해 특정 국가안보법 위반 활동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주장된 기관
- 2021 년 국방수권법(NDAA) 제 1260H 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관련 기업
-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명단에 포함된 기관
- 특정 중국계 배터리 제조업체
- 외국지배기관(FCE: Foreign Controlled Entity)*

* 외국지배기관(FCE)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특정 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정부
- 특정 국가의 정부 기관 또는 산하기관
- 특정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인 개인

- 특정 국가에서 설립되었거나 조직되었거나, 본점(본사)을 두고 있는 단체 또는 사업 부문
- 또는 위에 언급된 자들에 의해 지배((법인의 의결권 또는 주식 가액의 50% 이상, 또는 조합 지분·수익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되는 모든 단체
- 단, 상장된 거래소 또는 시장이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조직되었거나, 특정 국가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하나 이상의 특정 외국 단체(SFE) 또는 외국 지배 단체(FCE)가 해당 상장 기업의 50% 이상을 지배하는 경우가 아닌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됨

한편, 외국영향기관(FIE)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SFE 가 해당 기관의 이사 또는 임원 등 핵심 인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 단일 SFE 가 해당 기관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복수의 SFE 가 총합 4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SFE 가 보유한 부채가 해당 기관 전체 부채의 15% 이상인 경우
- SFE 에게 해당 지불(applicable payment)이 이루어지고, 그 지불이 자격을 갖춘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계약, 합의 또는 기타 약정을 근거로 한 경우
- 특정 외국 기관(SFE)에게 설비, 에너지 저장 기술, 또는 적격 구성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계약, 합의 또는 기타 약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PFE 관련 제한 규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법인 관련 규정(Entity-level rules) – 납세자가 특정 외국 기관(SPE) 또는 외국영향기관(FIE)에 해당할 경우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Section 45Y, 48E, 45X, 45Q, 45U, 45Z)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 규정(Payment rules) – 납세자가 특정 외국 기관(SFE)에게 실질적 통제력(effective control)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급을 하는 경우, Section 45Y, 48E, 45X 세액공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최대 10년 전까지 소급하여 48E 세액공제를 전액 반환(100% Recapture Rule)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물질적 지원 규정(Material assistance rules) – 납세자가 운영하는 시설(Section 45Y, 48E 관련)에 사용된 제조 제품이나 부품의 원재료를 금지외국기관(PFE)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경우,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해당 비율은 세액공제 종류나 산업별로 상이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함)

세액공제 별 PFE 제한규정에 따른 적용 내용 및 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액 공제 제한 적용 시기]

세액공제	특정 외국 기관 (SFE)*	외국지배기관 (FIE)	물질적 지원 규정 (Material Assistance)
45Y/48E	2026 년	2026 년	2026 년
45X	2026 년	2026 년	2026 년
45Q	2026 년	2026 년	해당사항 없음
45U	2026 년	2028 년	해당사항 없음
45Z	2026 년	2028 년	해당사항 없음

*개정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2026 년부터

(3) 기타 세액공제 일몰기한 변경

OBBBA 법안에 의해 일몰기한이 단축되거나 새롭게 일몰기한이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Sec.	세액공제	현행세법상 일몰기한	개정세법 일몰기한
25C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	2032/12/31	2025/12/31
25D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에 30% 세액 공제)	2034/12/31	2025/12/31
25E	Previously-Owned Clean Vehicle Credit (중고 전기차)	2032/12/31	2025/9/30
30C	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	2032/12/31	2026/6/30
45L	New Energy Efficient Home Credit	2032/12/31	2026/6/30
45W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s Credit (상업용 전기차)	2032/12/31	2025/9/30
30D	Clean Vehicle Credit (전기차 신차)	2032/12/31	2025/9/30
179D	Energy Efficient Commercial Building Deduction	영구적 혜택	2026/6/30

2. 미국 법인세 관련 개정

미국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세법	개정세법
이자비용 공제 한도 변경 (Section 163(j))	EBIT x 30%	EBITDA x 30%.
Bonus Depreciation 영구화 (Section 168(k))	(적격 고정자산) 취득연도 일시상각 비율 점진적 축소 및 폐지 (2022년까지 100%, 2023년 80%, 2024년 60%, 2025년 40%, 2026년 20%, 2027년 이후 일몰)	(적격 고정자산)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연도 일시상각 100% 영구화 (신규) 2025년 1월 19일 이후부터 2029년 전까지 공사 시작, 2031년까지 생산/제조 시작하는 적격부동산 (Qualified Production Property, QPP): 100% (기존 39년 상각자산)
적격자산 손금산입 한도 인상 (Section 179)	2025년 기준 \$1.25M 한도 (단, 투자액이 \$3.13M 초과시 초과 금액만큼 한도액 감소)	2026년 기준 \$2.5M 한도 (단, 투자액이 \$4M 초과시 초과 금액만큼 한도액 감소)
연구개발 비용 자본화 완화 (Section 174/174A)	미국내 R&D: 5년상각 해외 R&D: 15년상각	미국내 R&D: 100% 공제 (과거연도 잔여 상각비용 경우 2025년에 일시상각 또는 2026년까지 조기상각 가능함) 해외 R&D: 15년상각

1. 이자비용 공제 한도 기준 변경 (Section 163(j))

당해 연도의 순이자비용(비특수관계자 지급분 포함)의 공제한도의 기준이 되는 소득 (Adjusted Taxable Income, ATI)를 산정하는 방법이 현행 세법상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에서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로 변경됩니다. 해당 소득의 30%까지 순이자비용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기한 이월되어 이후 과세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Bonus Depreciation (Section 168(k))

내용연수가 20년 이하인 적격 고정자산(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고자산 포함)에 대해, 해당 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세무상 취득가액의 100%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시상각(Bonus Depreciation)이 허용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2023년 이후 기간에 대해 일시상각 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 제한해 왔으나 (2025년 기준 40%), OBBBA에서는 취득가액의 100%를 일시에 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생산 및 제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Qualified Production Property(QPP) 자산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9년 동안 감가상각되던 비주거용 부동산(Non-Residential Real Property) 중 생산 및 제조가 이루어지는 자산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0%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적격자산 손금산입 한도 인상 (Section 179)

사업 초기에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취득 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혜택입니다. 적격자산에는 일반적으로 기계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 가구 및 비품, 업무용 차량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이 포함됩니다.

Section 179에 의한 손금산입은 연도별 한도가 존재하는데, 2025년 기준 \$1.25M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기업의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3.13M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만큼 손금산입 한도가 줄어듭니다.

OBBBA 법안은 Section 179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2.5M로 증가시키는 한편, 손금산입 한도를 감소시키는 투자규모의 기준도 \$4.0M으로 인상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 비용 자본화 완화 (Section 174/174A)

미국 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은 해당 발생 연도에 전액(100%)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과거 연도에 자본화하여 아직 상각하지 않은 잔여 비용은 2025년에 일시 상각하거나, 2026년까지 조기에 상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자본화는 현행세법과 같이 계속 15년에 걸쳐 안분 상각해야 합니다.

3. 국제조세 관련 개정

국제조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세법	개정세법
GILTI(NCTI) (Section 951A)	GILTI income 에 대응되는 Section 250 공제 비율: 50% GILTI 관련 간주외국납부세 액공제 비율: 80% GILTI 관련 유효세율 13.125%(미국 법인세율 21% x (100% - 50%)/80%)	명칭 변경 (GILTI -> NCTI) 2026 년 이후 GILTI income 에 대응되는 공제 비율을 40%로 변경 2026 년 이후 GILTI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비율 90%로 상향 2026 년 이후 유효세율 14% (미국 법인세율 21% x (100% - 40%)/90%)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NDTIR, QBAI x 10%) 차감 삭제
FDII(FDDEI) (Section 250A)	FDII 공제율(deduction rate): 37.5% FDII 유효세율: 13.125% (미 국법인세율 21% x (100% - 37.5%))	2026 년 이후 FDII 공제율(deduction rate): 33.34%로 변경 FDII 유효세율: 13.9986% (미국법인 세율 21% x (100% - 33.34%))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DTIR, QBAI x 10%) 차감 삭제
BEAT (Section 59A)	BEAT 세율: 10%	2026 년 이후 BEAT 세율: 10.5%

1. GILTI (NCTI 로 명칭 변경) 세제 관련 개정사항

2017 년 트럼프 대통령 1 기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TCJA(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미국주주가 보유한 특정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US CFC³) 중 해외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US CFC 에 대하여 미국 모회사의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소득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고 현지에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 년부터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무형자산 소득이란 단순히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IP)과 같은 특정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US CFC 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 중 일반적인 사업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미국 모회사의 무형자산을 활용해 창출된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³ US CFC 란 미국주주(U.S. Shareholders)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해외자회사로써, 여기서 미국주주는 미국인(개인, 법인, 파트너십 등)이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의결권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GILTI 과세대상 소득을 구하는 방식은 먼저 US CFC의 순이익(Tested Income)을 구한 뒤 여기에 해당 회사들이 보유한 공장·설비등 유형자산, 즉 QBAI(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의 10%에 해당하는 금액(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NDTIR)을 차감한 금액이 GILTI 소득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계산된 GILTI 금액의 50%를 공제하여 최종 과세소득을 계산한 다음, 해당 소득에 대응되는 외국납부세액의 최대 80% 상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OBBBA 법안에서는 상기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장이나 설비등 유형자산에 대한 간주이익(NDTIR, QBAI x 10%)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무형자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이에 걸맞게 GILTI 세제의 명칭을 NCTI(net CFC tested income)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GILTI 세제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적용되는 유효세율은 해외자회사(US CFC)의 소득 발생 시 미국 모기업이 미국에서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세율로서, 현행세법에서는 GILTI 소득(NDTIR 차감 후 소득)에 대해 13.125%의 유효세율(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포함)이 적용되었으나, OBBBA 법안에서는 NCTI 소득(NDTIR 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 감소(50% -> 40%)로 인해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율 상승(80%->90%)에도 불구하고 유효세율이 14%로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2. FDII (FDDEI 로 명칭 변경) 관련 개정사항

FDII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규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서 판매·사용될 때 얻는 소득에 대해 감세혜택을 부여하여 미국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 미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미국 외 원천소득에 대해 일정비율 공제혜택을 부여합니다.

현행세법상 FDII 공제액을 구하는 방식은, 먼저 기업이 벌어들인 일정사업 소득(Deduction-Eligible Income, DEI)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기계, 설비 등)가액 (QBAI)의 10% 상당액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DTIR)를 공제한 소득(Deemed Intangible Income, DII)을 구한 뒤 여기에 해외 관련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해서 FDII 를 산출한 다음 FDII 에 37.5%를 곱하여 최종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이번 OBBBA 법안에서는 위 GILTI(NCTI)와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액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간주이익인 DTIR 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무형자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제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이에 걸맞게 FDII 의 명칭을 FDDEI (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으로 변경하였습니다.

FDII(FDDEI)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관련 유효세율은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기업이 미국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율로서, OBBBA 법안에서는 FDII(FDDEI) 공제율을 37.5%에서

33.34%로 낮추어 FDII(FDDEI) 관련 유효세율이 13.125%에서 13.9986%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관련 개정사항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미국기업이 미국세제상 공제가능한 경비를 해외 관계사에 지급하는 경우 이를 '세원잠식 지급액'(Base Erosion Payments)으로 간주하여 일종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BEAT 세제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및 기업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받은 비용들 중에서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전체 비용의 3%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매출 기준 5억 달러 요건을 초과한 미국 기업이 특허 사용료(로열티), 경영지원 서비스 비용, 미국 외 본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해외로 지급한 금액이 총 금액이 전체 비용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해외로 지급한 비용을 가산한 소득(Modified Taxable Income, MTI)에 BEAT 세율 10%를 곱한 세액과 실제 해당 기업의 법인세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세법상 미국내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한 과도한 해외 관계사 지급 비용 방지를 위해 BEAT 계산 목적상의 세율은 현행 10%가 적용되고 있으나, OBBBA 법안에서는 BEAT 세율을 10.5%로 소폭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외 관계사에 대한 지급액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PMG Observations

- **전기차 세액공제 및 태양광·풍력 발전 생산·투자세액공제가 조기에 폐지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관련 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전방 수요 감소로 인해 이차전지 제조업,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업 등 연관 산업의 경제성도 악화시켜 단기적인 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세제 혜택 종료 이전에 설비투자 및 생산시설 구축을 서둘러 단기 혜택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미국 내 **주(州) 정부 및 지역 단위의 보조금이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미국에 진출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유리한 세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내 신규 공장 설립 또는 설비투자(CAPEX) 확대를 고려 중인 기업들은 적격자산 및 미국 내 R&D 비용을 즉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자비용 공제 한도의 기준이 EBIT 에서 EBITDA 로 전환됨에 따라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은 제조기업의 이자비용 공제 여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 내 제조시설이나 연구개발 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원가 경쟁력 약화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 제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거점 확보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GILTI, FDII, BEAT 등 미국 세법상 국제조세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인을 글로벌 사업 및 해외 소득 창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여 소득과 무형자산(IP)을 미국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세부담 최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국내 본사에 미치는 우리세법에 따른 영향과 미국 및 해외세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주요 내용 만을 요약하였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KPMG US 뉴스레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KPMG reports: Tax subtitle for “One Big Beautiful Bill”](#)

Global Tax Team – Key Contacts

오상범 부대표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이성욱 전무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민우기 상무	wmin@kr.kpmg.com	02-2112-6886
강성원 상무	kang22@kr.kpmg.com	02-2112-6771
백천욱 상무	cbaik2@kr.kpmg.com	02-2112-3339
김지연 전무	jiyeongkim@kr.kpmg.com	02-2112-0167
정혜원 이사	hjung2@kr.kpmg.com	02-2112-7572

home.kpmg/socialmedia



[Privacy](#) | [Leg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